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(2025. 2. 12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○ 장애인재활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정의 추가(안 제2조제2호)

○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조의2)

○ 근로장애인의 자격조건 완화(안 제5조)

- (현행) 포항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- (개정)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
○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시설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4항)

○ 작업장 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보고 주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개정(안 제14조)

다. 관련법령

❍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 및 제46조(고용 촉진)

❍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‘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’ 고용대상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, 지침에 따른 위탁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종합검토 결과

- 2025년 2월 기준,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위치한 ‘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’은 2005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이며, 종사자 9명과 근로장애인 29명, 훈련장애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‘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’은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제46조,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‘장애인 보호작업장’으로 설치 근거에 대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사료되며,

- 또한,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‘장애인 재활작업장’의 수행 범위를 규정한 부분도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따른 ‘장애인 보호작업장’의 기능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안 제5조 근로장애인의 대상을 ‘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판단됨.

- 아울러, 안 제7조에 근거하여 작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만큼 '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'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부분들도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